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퇴직수당 지급률 상향 조정 및 누진제 폐지〉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51호)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8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개	요		1
【박정현의원안】			1
【박민규의원안】			3
II .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주요내용			5
2. 검토의견			6

I. 개 요

【박정현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현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 6.

다. 회부연월일 : 2025. 1.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에 비해 공무원은 연금에만 의존하는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음. 공무원 퇴직수당 도입 당시 장기적으로 민간 부분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임을 명시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액 누진제 적용으로 매우 불균형한 상황임.

현행법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계산식에 따라 퇴직수당을 산출하고, 시행령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의 경우 그 비율이 6.5%에 지나지 않고 20년 이상 근속하더라도 39%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퇴직수당 제도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박민규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민규의원 등 18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2. 14.

다. 회부연월일 : 2025. 2.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계산식에 따라 퇴직수당을 산출하고, 시행령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퇴직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장기재직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라고 보일 우려가 있고,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퇴직수당 제도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저연차 공무원들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퇴직 시, 퇴직수당이 지나치게 소액이라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더군다나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대해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해 이미 누진적 퇴직금제도가 사라진 상황에서 오직 정부만 퇴직금 누진제

성격의 퇴직수당 제도를 고수하는 건 모순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퇴직수당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정부 당국은 퇴직수당과 퇴직금은 성격과 다르다며 법 개정의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음. 하지만 당초 퇴직수당이 도입되던 제13대 국회 제151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1990.12.17.)에서 당시 주무부처인 총무처 장관은 퇴직수당 도입에 대해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공급받게 되는 민간근로자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한가지만 지급받게 되는 공무원 간에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그 목적”이며 “퇴직수당의 지급액은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91년 10월부터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평균 40% 수준으로 지급하되,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분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며 퇴직수당의 성격을 분명히 밝힘.

이에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들은 재직기간에 상관 없이 100분의 39를 적용하도록 하는 퇴직수당 계산식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박정현의원안·박민규의원안 제62조제2항).¹⁾

현 행	박정현의원안	박민규의원안
제62조(퇴직수당) ① (생 략)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frac{\text{재직기간} \times \text{기준소득월액} \times \tex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 ③ (생 략)	제62조(퇴직수당)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frac{\text{재직기간} \times \text{기준소득월액} \times 39}{100}$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퇴직수당)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재직 기간 산출 시 재직기간의 상 한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frac{\text{재직기간} \times \text{기준소득월액} \times 39}{100}$ ③ (현행과 같음)

1) 박민규의원안은 퇴직수당 산정 기준 재직기간 상한을 3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2. 검토의견

현행법상 퇴직수당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는데,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하게 재직기간 1년당 1개월분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되, 퇴직수당 산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퇴직수당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²⁾³⁾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률이 6.5%에서 39%⁴⁾까지 누진적으로 점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지급 요건	지급액
1년 이상 5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6.5%
5년 이상 10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22.75%
10년 이상 15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29.25%
15년 이상 20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32.5%
20년 이상인 경우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39%

2)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 (생략)

②·③ (생략)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이는 월급여 수준이 유사한 민간근로자 대비 공무원의 퇴직수당이 최대 약 39%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함.

5) 민간근로자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의 차등 없이 재직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출됨.

개정안들은 퇴직수당 지급률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100분의 39의 동일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퇴직수당 계산식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퇴직수당 지급률이 현행 대비 상향 조정되게 되고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률 누진제는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공무원의 퇴직수당 지급률 등 퇴직수당 지급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 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민간 부문과의 균형성, 재직 기간에 따른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를 비롯하여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과 공무원의 신분상 특수성,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수당 누진제 도입의 취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⁶⁾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봄.

재직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높은 비율의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방식은 재직기간에 따라 당사자를 불합리 하게 차별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개방형 직위 등 외부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퇴직수당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게 됨으로써⁷⁾ 우수한 외부인재의 영입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바, 개정안들에 따른 경우 이와 같은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입법적 효과가 기대됨.

6) 퇴직급여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과 고용자로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합산하여 재원을 마련하지만, 퇴직수당은 전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2항).

7) 예를 들어, 민간에서 2년간 재직한 경우 2개월분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으로 재직 시에는 2개월분 월급의 6.5%를 퇴직수당으로 지급받게 됨.

다만, 개정안들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방식의 소득보장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주로 가지는 반면, 퇴직수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용자 책임의 급여로서 장기 근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근로보상적 성격을 감안하여 장기재직자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주도록 설계된⁸⁾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급여인 만큼 법률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 등 공공부문의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법률 개정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68억 800만원, 2030년 879억 3,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892억 2,300만원으로 예상됨.⁹⁾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퇴직자수 (A, 단위:명)	일반직	남성	34,664	33,750	32,760	33,026	32,305	-
		여성	14,178	15,589	16,244	16,680	15,890	-
	교육직	남성	4,469	4,358	3,869	3,835	3,571	-
		여성	8,493	8,619	8,723	8,884	9,022	-
평균 퇴직수당 차액 (B, 단위:만원)	일반직	남성	111	131	140	147	158	-
		여성	156	149	155	171	192	-
	교육직	남성	44	47	56	58	65	-
		여성	50	53	46	44	45	-
추가재정소요 (A×B, 단위: 백만원)	일반직	남성	38,477	44,213	45,864	48,548	51,042	228,144
		여성	22,118	23,228	25,178	28,523	30,509	129,556
	교육직	남성	1,966	2,048	2,167	2,224	2,321	10,726
		여성	4,247	4,568	4,013	3,909	4,060	20,797
	합계		66,808	74,057	77,222	83,204	87,932	389,2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최재식, 실무해설 공무원연금법(삼익출판사, 1996), 26면.

인사혁신처는 개정안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재직자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 등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탄력적인 인사구조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들의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700억원 내외 규모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현행 퇴직수당 산정방식은 인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장기 재직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정안들과 같이 퇴직수당 산정방식이 변경될 경우 오히려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촉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

9) 비용추계의 구체적인 상세내역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박정현의원안, 의안번호 제2207251호 / 박민규의원안, 의안번호 제2208182호) 참조